

[총 평]

2018년 7급 세법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2017년과 비교한다면, 지나치게 지엽적인 지문과 수험생으로서 준비하기 힘든 판례 등이 출제되기 보다는 보편적 주제를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문으로 출제하였고, 규정에 대한 개념중심의 문제와, 2문제의 구체적 계산문제가 출제된 것 등의 차이가 있었다. 작년에 비해 중 또는 상의 수준의 문제들이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와 시간소요의 어려움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계산 문제의 구조, 지문의 지엽성 및 중 또는 상 수준의 문제비율과 지문의 길이 등을 판단하면 전형적인 7급 세법시험의 유형을 정확히 보여주는 시험이 아니었나 판단된다. 출제문항은 국세기본법 6문항, 국세징수법 2문항, 법인세법 4문항, 소득세법 4문항, 부가가치세법 3문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작년과 완전히 동일한 출제배분을 보였고, 20문항의 난이도를 본 강사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상) 3문항, (중) 8문항, (하) 9문항의 구성으로 7급 국가직 시험문제로 보았을 때는 (하)수준의 문항이 평년보다 한 두 문제 많게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출제의 추세를 수험생들은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세법은 단순암기가 아닌 지문의 해석과 원문규정의 깊이 있는 검토와 숙지를 기준으로 한 체계적인 공부가 되어야 한다는 점과 7급 세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역시 9급 수준의 내용을 단단하게 보강 한 후 해당 규정에 추가적인 지역적 규정을 덧붙여듯이 보완하는 방향이 7급 세법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강조하고 싶다.

(KG패스원 세법전임 이진욱 세무사)

01. 「소득세법」상 거주자 중 반드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는?

- ①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자
- ② 분리과세이자소득만 있는 자
- ③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④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난이도> 하

정답> ①

해설 분리과세대상소득만 있는 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와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며,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대상 사업자는 제외)이 있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02.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관련한 다음 제시문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① 2개월
- ② 3개월
- ③ 6개월
- ④ 1년

난이도> 하

정답> ④

해설 제척기간의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권(금액 또는 취소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03.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파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 ④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난이도> 하

정답> ②

해설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04.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무조사는 2018년 4월 1일 이후 개시된 것으로 가정함)

- 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등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그 통지를 해야 한다.
- ② 세무조사는 통합조사가 원칙이지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조사의 경우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까지만 실시할 수 있다.
-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조세법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법칙조사를 한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하지 않는다.
- ④ 세무조사 중 납세자의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세무관서에 일시보관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그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난이도> 하

정답> ③

해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공시송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조세법칙조사의 경우도 결과통지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05.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등기된 국내 소재의 상가건물을 아버지 乙에게서 증여받고 그 건물을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 丙(부동산임대업 영위)에게 양도한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를 적용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甲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乙에게서 증여를 받아야 한다.
- ㄴ. 그 건물의 취득가액은 甲이 증여받은 당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ㄷ. 甲이 그 건물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ㄹ.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보유기간의 산정은 甲이 그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난이도> 중

정답> ②

해설> 이월과세는 수증자인 甲의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자인 乙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나. 그 건물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인 乙이 취득한 당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보유기간의 산정은 乙이 그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06. 「법인세법」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존 주주에게 공모절차를 거쳐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 ② 기존 주주에게 공모절차를 거쳐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 ③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5,000원인 주식을 시가 10,000원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5,000원이며 시가 10,000원인 주식을 20,000원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난이도> 중

정답> ③

해설>

- ① 기존 주주에게 공모절차를 거쳐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기존 주주에게 공모절차를 거쳐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무액면주식 발행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채무면제이익)은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지문상에서는 시가 1만원을 초과하여 발행한 1만원(2만원-1만원)의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07. 소득세법령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 ③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난이도> 하

정답> ④

해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08.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A의 17기 사업연도(2017. 1. 1. ~ 2017. 12. 31.)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내용이다. (주)A가 17기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2018년 3월 8일에 신고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손금불산입금액은?

- 2016년 12월 10일 대표이사 업무용승용차(배기량 3천cc, 5인승)를 100,000,000원에 구입함
- 해당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손금산입하거나 지출한 항목은 아래와 같음
 - 업무전용자동차보험료: 1,000,000원
 - 유류비: 20,000,000원
 - 자동차세: 1,500,000원
 - 감가상각비: 20,000,000원
- 차량운행기록부 내역 중 업무사용비율은 90 %로 확인됨
- 그 외 업무용승용차는 없고, 해당 업무용승용차는 취득 이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위 비용 이외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없음

- ① 4,250,000원
- ② 10,000,000원
- ③ 14,250,000원
- ④ 28,250,000원

난이도> 상

정답> ③

해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1) 감가상각비 중 사적사용비율(업무사용비율 외의 비율 10%)에 해당하는 금액 : 20,000,000원 × 10% = 2,000,000원
- (2)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0,000,000원 × 90% - 8,000,000원 = 10,000,000원
- (3) 기타비용 중 사적사용비율(업무사용비율 외의 비율 10%)에 해당하는 금액 : 22,500,000원 × 10% = 2,250,000원
- (4) 손금불산입액 = (1)+(2)+(3) = 14,250,000원

09.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조세법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법치조사를 하는 경우
- ②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③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 ④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난이도> 하

정답> ②

해설> 세무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 ②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현재 정해진 사항 없음)

10. 「국세징수법」상 재산의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 ②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동일하게 그 총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압류할 수 있다.
- ③ 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난이도> 중

정답> ④

해설>

- ① 절대적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압류할 수 없다.
- ② 퇴직연금금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해당 연금액 중 최저생계비 수준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까지만 압류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압류할 수 있다.
- ③ 채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즉,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의 여부에 불문하고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11.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도서
- ② 국방부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에게 제공하는 골프 연습장 운영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
- ③ 미술관에 입장하게 하는 것
- ④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난이도> 중

정답> ②

해설>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 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대상이나, 골프연습장 운영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과세대상).

12. 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사업 목적이 비영리이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 ③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④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난이도> 상

정답> ③

해설>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소득세법 2조의 2 ⑤항). 분리과세대상 소득은 납세의무자 스스로의 신고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납세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현 소득세법은 위 규정을 선언적 규정으로서 납세의무가 존재한다는 문언적인 입법상 명시를 하고 있다.

13. 부가가치세법령상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하)

- 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
-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③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④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난이도> 하

정답> ①

해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4.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甲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내역이다.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중)

- 매출액은 50,000,000원이며, 매출에누리 1,000,000원이 차감된 금액임
- 위 매출액에는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은 연체이자 5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위 매출액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멸실한 재화의 가액 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위 매출액 중 600,000원은 외상 매출한 것으로서 거래처가 파산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 ① 46,900,000원
- ② 47,500,000원
- ③ 47,900,000원
- ④ 48,500,000원

난이도> 중

정답> ②

해설> 50,000,000원 - 500,000원 - 2,000,000원 = 47,500,000원

- * 매출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시된 매출액은 이미 매출에누리가 차감된 이후의 금액이므로 고려대상이 아님
- * 연체이자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멸실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 *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15.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

- ① 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따라 심판청구인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③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난이도> 상

정답> ①

해설>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국기법 제76조 ①)
1. 심판청구인·처분청·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2. 제1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요구
3. 제1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즉,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따르는 것이 아닌, 조세심판관의 직권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16.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

- ①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 ② 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신고로 인하여 납세의무확정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③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수정신고를 한 자는 과소신고세액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해주지 않는다.
- ④ 납세자의 과소신고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경우 그 결정통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난이도> 중

정답> ③

해설> 조기수정신고시의 가산세 감면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17.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

- ①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③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다.
- ④ 국가가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없다.

난이도> 중

정답> ④

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산금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국가 등도 납세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법 등에 대하여는 의무불이행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18.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

- 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법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②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 ③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 ④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난이도> 중

정답> ③

해설>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9. 「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이 집행법원 등에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하)

- ①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 ② 강제집행을 받을 때
- ③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④ 법인이 해산한 때

난이도> 하

정답> ①

해설> 교부청구의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제시된 ①의 지문은 납기전징수의 사유에는 해당하나 교부청구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다.

- ①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②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③ 강제집행을 받을 때
- ④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 ⑤ 경매가 개시된 때
- ⑥ 법인이 해산한 때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상속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고 30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② 상속인(대습상속인이 아님)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며 성년인 경우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③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받아 그 평가수수료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 ④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난이도> 하

정답> ④

해설> 상속세의 자녀공제는 자녀 1인당 5천만원이 적용된다.